

# Muan Web Contents

2023년 12월 09일 18시 21분



# 목차

목차	2
가축전염병 예방법	3
가축방역사업세부 실시요령	3
1.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	3
2.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	3
3.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	3
4.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	3
5.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	3
6.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의무화	4
7.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	4
살처분 보상금 감액	4
보상금 감액의 경감	4
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	4
9.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	6
10. 출입차량의 변경, 말소등록 기준 마련	6
11. 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	6

가축전염병 예방법	축산차량 등록제	구제역 방역	조류인플루엔자 방역
소결핵병 방역			

## 가축방역사업세부 실시요령

### 1.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

▪ 지정대상

-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
-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
-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

### 2.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

-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여야 함
- 교육 및 점검 완료일로부터 각각 일주일 이내에 교육·점검 결과를 시·군·구에 통지

### 3.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

1. 가축사육시설(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)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

---

2.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 
2의2.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

---

3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제조업자

---

4.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시장·가축검정기관·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

---

5.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

---

6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

---

### 4.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마련

▪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방역수칙 설정

-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시 다른 가축과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
-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출입 전·후 소독 실시
- 축사 내부 진입 시 전용 의복,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
- 야생 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,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

### 5.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기준 마련

- 제1종 가축전염병의 전파·확산이 우려되는 경우,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
- 제다만,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·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목가능

- (구비 시설·장비) 소독설비, 전실, 울타리, 담장, 그물망, 쥐·곤충을 없애는 시설 등

## 6.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의무화

- 농가는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함(기록 작성·보존 대상에 가축외에 식용란 추가)

10만수 이상의 닭 오리류를 기르는 농가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## 7.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

### 살처분 보상금 감액

1. 외국인 근로자 조치사항 미준수: 가축평가액의 10~60% (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유무에 따라)
2.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, 점검, 결과통지 미실시: 가축평가액의 10%
3.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: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~60%
4. 역학조사를 방해, 거부, 회피, 거짓된 진술,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: 가축평가액의 20%
5.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: 가축평가액의 40% (기타 주사 약물 검사 투약 명령 및 금지명령 위반시 가축평가액의 5%)
6. 소독 및 구충 및 구서 미 이행시: 가축평가액의 5%
7. 방역기준 미준수
  - 전실 및 입출하 기준 미 준수: 20%
  - 신발소독조 미설치 및 그 외 방역기준 미 준수: 5%
8. 격리 역류 이동제한 소독 명령 위반: 20%
9. 이동중지 명령 위반: 20%
10. 살처분 명령 위반: 10~60% (지연 일수에 따라)
11. 오염 물건의 소각, 매몰, 소독 명령 위반 및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: 20%
12.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농가 5년 이내에 2회: 20%, 3회: 50%, 4회: 80%
13.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: 30%  
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: 100%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)

### 보상금 감액의 경감

1. 질병관리등급 1등급: 가축평가액의 10%, 2등급: 가축평가액의 5%
2. 가축전염병 조기신고자: 10%
3.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받은 경우: 10%

##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

-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
  -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-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, 교육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

(<http://www.muam.go.kr>)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
▪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200만원, 2회: 400만원, 3회: 1,000만원

▪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200만원, 2회: 400만원, 3회: 1,000만원

▪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
▪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, 예찰을 거부 및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
▪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경우

▪ 1회 위반: 5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300만원

▪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
▪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
▪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
▪ 가축의 소유자가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500만원

▪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·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, 선박, 자동차,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300만원

▪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·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 · 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50만원, 2회: 100만원, 3회: 150만원

▪ 탁송업자가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

▪ 1회 위반: 100만원, 2회: 200만원, 3회: 300만원

c.f.) 제31조(지정검역물)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(이하 "지정검역물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. 24., 2013. 3. 23.>

1. 동물과 그 사체

2. 뼈 · 살 · 가죽 · 알 · 털 · 발굽 · 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

3.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, 사료원료, 기구, 건초, 깔짚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
## 9.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

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조사료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·쌀겨·톱밥·갈짚·난좌·가금부산물 운반, 진료·예방접종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수리, 가금 출하·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, 가축사육시설의 운영·관리(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)

## 10. 출입차량의 변경, 말소등록 기준 마련

- 시설출입차량(GPS 장착 대상)을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경우, 시설출입차량 변경 또는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·구에 제출하여야 함

## 11. 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

-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

MUAN

# Web Contents

 무안군